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07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(제3호가목은 제외한다)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.
- 나. 제2호가목에 따른 지연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은 지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 - 1) 천재·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
- 2) 소송 등의 사유로 의무의 불이행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.
 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2)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- 3)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
 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 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	2차	3차 이상
가.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	법 제98조			
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제 3 항 제 1			
1) 지연신고기간 1개월 미만	호	30만원		
2) 지연신고기간 1개월 이상 6개		40만원		
월 미만				
3) 지연신고기간 6개월 이상		50만원		
나. 삭제 <2017. 7. 17.>				
다.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댐	법 제98조	30만원	40만원	60만원
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	제 3 항 제 3			
을 작성·비치하지 않거나 그 기	호			
록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또는				
거짓된 기록을 제출한 경우				

라. 삭제 <2017. 7. 17.>				
마. 법 제46조제6호 및 제7호를 위 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		100만 원	200만 원	300만원
바. 법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 천수의 사용량을 기록·보관하지 않거나,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방 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 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공하거나,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하천수 의 사용계획 또는 사용실적을 통 보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통보	제 3 항 제 5	30만원	40만원	50만원
한 경우 사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5조제 1항에 따른 토지의 출입·일시 사용 또는 죽목·토석이나 그 밖 의 장애물의 변경 또는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	제 3 항 제 6	50만원	60만원	80만원
아. 법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 지를 않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경우		300만 원	400만 원	500만원
자.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 우 또는 검사를 방해하거나 기 피한 경우		50만원	60만원	80만원